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도급 계약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37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추가	4
2. 하도급 계약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7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시 건설공사발주자 등의 지급의무	12

I. 제안경위

2024년 9월 30일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 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다.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Ⅲ. 검토의견

1.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사유로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1. · 2. (생략) <u><신설></u>	<u>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u>안전관리 인력 · 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①태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안전관리 인력 · 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1)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 · 홍수 등 악천후, 전쟁 ·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함으로써 불가항력이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외에 노동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 제70조제1항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나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의 지연·중단의 상황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기간 연장요청에 건설공사발주자가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제70조제1항제3호는 시공사, 즉 도급인의 의무라 볼 수 있는 안전관리 인력 충원이나 시설의 구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할 시공사가 이를 해태한 경우까지 건설공사발주자 부담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행법은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도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규정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략) <신설>	<u>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4조(계상기준)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대상액(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²⁾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

반면,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무 계상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³⁾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체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비율을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자 인건비,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현장의 안전을 제고

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전체의 종류·규모를 고려하여 요율을 산정·적용한 것으로 하도급 계약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 소요되는 안전관리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행법은 도급인에게 별도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⁴⁾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인 책임 하에 사용·관리하도록 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건설사 규모·공사 종류·현장 상황 등에 따라 하도급사에 대한 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다양한데, 이를 법에서 일괄로 정할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는 도급사의 탄력적 대응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고, 법으로 계상요율을 정하면 도급사는 그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사에게

4)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 앞 페이지 각주 3번 참조

계상하지 않으려는 유인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하도급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이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 수준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사 종류·규모 등에 따른 각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실태파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에 대한 도급사 및 하도급사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고, 하도급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필요성, 적정요율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비용 추가 발생 시 건설공사발주자 등의 지급의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비율에 따라 추가 발생한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72조 제7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⑦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하되 남은

금액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⁶⁾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⁷⁾

개정안은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부담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 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산업재해 예방의무에 따라 당연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⁸⁾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5

6)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106, 2002.3.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고용노동부, 2024.1월

8) 도급인(하수급인)은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 금액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통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